#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권칠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678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8.

발 의 자:권칠승·김준혁·전진숙

박해철 · 차지호 · 박용갑

서미화 · 홍기원 · 한민수

정준호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촬영물, 음성물, 복제물, 개인정보, 허위사실 등(이하 "촬영물등"이라 함)으로 인해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 은 학생에게 국가가 촬영물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성희롱, 성폭력 등 사이버폭력이 빈번 해지면서 많은 피해 학생들이 홍보 부족으로 국가의 지원 사실을 모 르고 촬영물등의 삭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촬영물등의 삭제 지원 내용과 방법 등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사이버 폭력 피해 학생들의 촬영물등 삭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려는 것임(안 제16조의4).

법률 제 호

##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의4제1항 중 "있다"를 "있으며, 그 지원의 내용·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알려야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방법"을 "방법 및 공지방법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의4(사이버폭력의 피해자	제16조의4(사이버폭력의 피해자
지원) ① 국가는 사이버폭력에	지원) ①
해당하는 촬영물, 음성물, 복제	
물, 편집물, 개인정보, 허위사실	
등(이하 이 조에서 "촬영물등"	
이라 한다)이 정보통신망에 유	
포되어 피해(촬영물등의 대상	
자가 되어 입은 피해를 말한	
다)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촬	
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	
할 수 <u>있다</u> .	<u>있으며, 그 지원의 내</u>
	용・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
	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
	학생 및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
	<u>다</u> .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	5
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· <u>방법</u> ,	방법
제4항에 따른 상환청구권 행사	및 공지방법
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	
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